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54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김문수・권향엽・조계원
김준혁・장종태・양부남
정진욱・이주희・황명선
염태영・이광희・김 윤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담임교사・상담교사 등 학교 내 인력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인지하더라도 이들을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연계할 절차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발굴과 개입이 담당자 개인의 관심과 의지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학

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를 “아동학대, 가족돌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2. ~ 5. (생 략)	제2조(정의) ----------. 1. ----------아동학대, 가족돌봄----------. 가.·나.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